

## 4 부채 / 채무 / 채권

### 4-1. 통합부채 현황

☐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2022년도 결산 기준 우리 장성군의 통합부채는 정부 산정결과 확정 후 **2023. 12월 중 수시 공시할** 예정입니다

### 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☐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장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1년	2022년	증 감	비고
자산(A)	2,642,327	2,817,285	174,958	
부채(B)	12,523	12,960	437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0.47	0.46	-0.01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### 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: 해당없음

### 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☐ 우리 장성군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1년				2022년				
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
합 계	7,967	0	7,967	0	9,159	207	8,951	2.32	
출연 기관	(재)장성장학회	7,967	0	7,967	0	8,613	0	8,613	0.00
	(재)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	0	0	0	0	545	207	337	61.7

☞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2년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, 예수금, 미지급비용, 당기법인세부채, 포인트충당부채 등 유동부채 208백만원이 있습니다.

### 4-5. 우발부채 현황 : 해당없음

### 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☐ 지방(자치단체)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장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1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2년도 현재액 E=(A+B)
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0	0	0	0	(원금기준)
일 반 회 계	0	0	0	0	0
특 별 회 계	0	0	0	0	0
기 금 회 계	0	0	0	0	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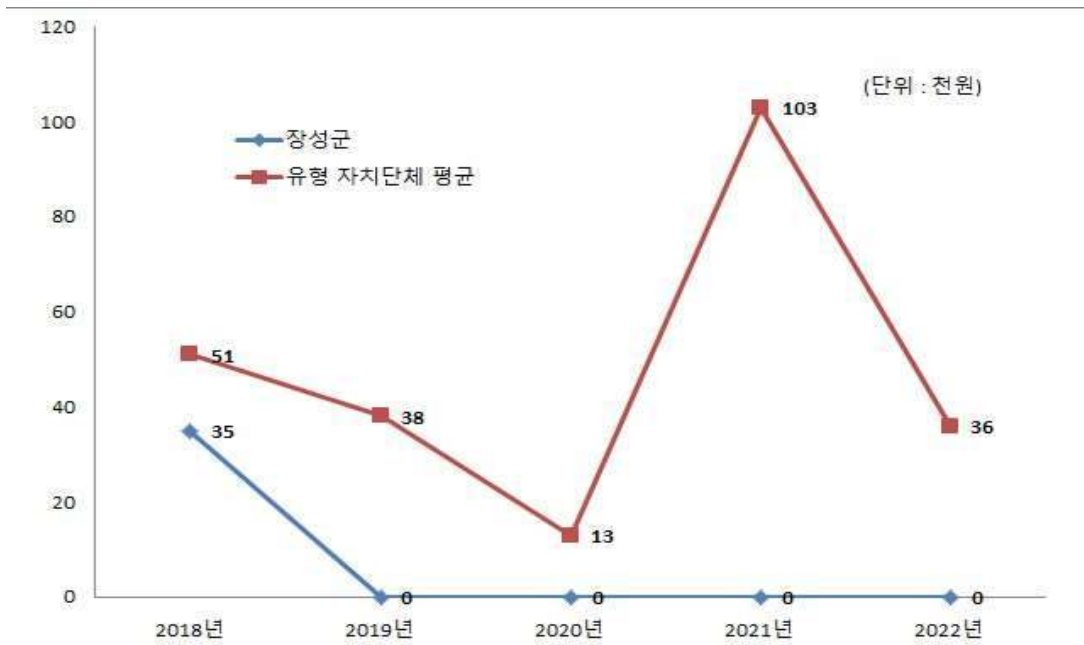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채무현황	35	0	0	0	0
인구수	45,795	45,739	44,464	43,365	43,146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1	0	0	0	0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

#### 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지방채발행한도액(A)	9,700	26,697	23,900	26,600	28,000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\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\* 지방재정법 개정('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\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 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

\*\* 차환채 =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
#### 4-8. 일시차입금 현황 : 해당없음

- ☐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

#### 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: 해당없음

---

●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
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●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
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---

#### 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▣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2~'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**'23. 12월에 별도 수시 공시** 예정입니다.

#### 4-11. 보증채무 현황 : 해당없음

- ▣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장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## 4-12. 채권 현황

-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장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1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2년도 현재액 (A+B)	
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	
합 계	7,818	△60	0	60	7,758	
일 반 회 계	7,479	0	0	0	7,479	
특별회계	소계	339	△60	0	60	279
	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	339	△60	0	60	279

- '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### 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채권현황	7,901	7,970	7,732	7,818	7,758

-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###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